제 2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식회사 세니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제 363 조 및 정관 제 20 조에 의거하여 제 21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 년 03 월 17 일(화) 오전 10 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 번길 16, 904 호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다.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박정웅 선임의 건(재선임)
         제 3-2 호 의안 : 사내이사 전경일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 3-3 호 의안 :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신규선임)
      라.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감사 최영붕 선임의 건(재선임)
      마.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바.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직접행사
      [개인]신분증
   2) 대리행사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2026 년 02 월 27 일

주식회사 세니젠

대표이사 박 정 웅 (직인생략)

[첨부 1] 제 1 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요 약 재 무 제 표

제 21(당)기 2025 년 01 월 0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0(전)기 2024 년 01 월 0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기	제 20(전)기	증감
자 산			
I. 유동자산	6,239,792,690	9,895,513,820	-3,655,721,130
II. 비유동자산	3,872,028,176	4,790,122,872	-918,094,696
자 산 총 계	10,111,820,866	14,685,636,692	-4,573,815,826
부 채			
I. 유동부채	2,758,028,085	2,407,067,336	350,960,749
II. 비유동부채	3,796,932,867	4,038,838,361	-241,905,494
부 채 총 계	6,554,960,952	6,445,905,697	109,055,255
자 본			
1. 자본금	3,614,235,000	3,614,235,000	0
2. 자본잉여금	39,238,858,395	39,149,936,895	88,921,500
3. 기타자본	(804,996,836)	(719,266,551)	-85,730,285
4. 결손금	(38,491,236,645)	(33,805,174,349)	-4,686,062,296
자 본 총 계	3,556,859,914	8,239,730,995	-4,682,871,0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111,820,866	14,685,636,692	-4,573,815,826
매출액	15,354,255,261	15,427,879,108	-73,623,847
영업이익(손실)	(4,374,487,146)	(5,874,575,015)	1,500,087,869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4,754,526,050)	(6,547,201,371)	1,792,675,321
당기순이익(손실)	(4,740,217,125)	(6,555,499,869)	1,815,282,744
기본주당손실	(668)	(945)	277
희석주당손실	(668)	(945)	277

[첨부 2]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8 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 8 조의 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의 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제 10 조【신주인수권】 1. (생략)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 (생략)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	**제 10 조【신주인수권】** 1.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	신주인수권 발행주식총수 증액/오기정정

개정전	개정후	비고
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생략) 7)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각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생략)	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7) <삭제> 3.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1~2. (생략)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생략)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1~2. (현행과 같음)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현행과 같음)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제 1 항에서 제 3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15 조의 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생략) 2.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3. <신설>	**제 15 조의 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 31 조 제 4 항 제 3 호 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삭제>	표준정관 반영
<신설>	**제 18 조의 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 발행조항 신설

개정전	개정후	비고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 분의 5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3.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 55 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4.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신설>	**제 18 조의 3【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채 발행조항 신설
<신설>	**제 18 조의 4【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제 19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19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불필요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개정
제 19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를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 23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지점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소집지와 개최방식】** 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지점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표준 정관 반영

개정전	개정후	비고
	2. 회사는「상법」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위임장 조항 반영
제 32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8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2 조【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8 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 반영
제 36 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 정관 반영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54 조【이익배당】 1~2. (생략) 3.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생략)	**제 54 조【이익배당】** 1~2. (현행과 같음) 3. 회사는 제 1 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 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신설>	**제 55 조【분기배당】** 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부터 45 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함
<신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 년 0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신설>	**부 칙** **제 2 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23 조, 제 29 조의 개정규정은 2027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제 3 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 32 조의 개정규정은 2026 년 0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첨 3] 이사 선임의 건

-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박정웅 선임의 건(재선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정웅	1969.03.02	2 년	재선임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박사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연구팀장 ㈜세니젠 CEO	이사회	최대주주 본인

- 제 3-2 호 의안 : 사내이사 전경일 선임의 건(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전경일	1977.12.20	2 년	신규선임	전북대학교 융합환경생명공학과 석사 ㈜세니젠 영업본부 ㈜세니젠 영업이사	이사회	-

- 제 3-3 호 의안 :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승원	1964.03.03	2 년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벡스코리아 대표 ㈜벡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사회	-

[별첨 4] 감사 선임의 건

- 제 4-1 호 의안 : 감사 최영붕 선임의 건(재선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영붕	1973.04.21	3 년	재선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 석사 ㈜SPC 삼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우인회계법인 전무이사	이사회	-

[별첨 5]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당기 (제 21 기)	전기 (제 20 기)	비고
이사 보수 한도액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전기 동일

[별첨 6]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당기 (제 21 기)	전기 (제 20 기)	비고
감사 보수 한도액	50 백만원	50 백만원	전기 동일

위 임 장

본인은 2026년 03월 17일 개최하는 ㈜세니젠의 제21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포함)에서 권유자 ㈜세니젠이 지정하는 (구명윤, 유지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정웅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전경일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최영붕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에 대해 찬반 표시를 “O”,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시내용

주 주 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6 년 03 월 일 시